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디지털 전환,
모바일 금연클리닉 신청부터 비대면 상담, 운영시간 후 금연 물품수령까지!

금연 ON



DH 디앤에이치브리즈 주식회사
(D&H Breeze Co., Ltd.)



02-6285-0825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중심상가1길 36,
원영빌딩 8층 801-제이200호 (우)18455



help@no-smoking.kr



https://no-smoking.kr

금연클리닉의 문턱, 이제는 낮춰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10년 새 반토막...성공률도 뒷걸음질

송고 2025-05-29 06:01

2014년 44만명→작년 22만명...“전자담배 등장 등으로 흡연 경각심 약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담배를 끊기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은 사람들이 10년 새 반으로 줄고, 금연 성공률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소(또는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총 21만8천589명이었다.

10년 전인 2014년 등록자 43만9천971명의 절반 수준이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010년 전후 40만 명 안팎에서 오르내리다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엔 57만 명으로 대폭 늘었고, 이후 줄어들긴 했으나 2019년까지 30만 명대 후반(35만8천966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엔 16만5천 명, 2021년 14만7천 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코로나19 회복 후 서서히 회복되긴 했으나 여전히 20만 명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중략)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금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줄고 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등장한 후 제조사 마케팅으로 인해 흡연자들이 '전자담배가 크게 해롭지 않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고, 냄새와 주변인의 불편으로 인해 금연을 하려던 사람들도 금연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아울러 "금연클리닉 서비스가 지난 수년간 효과 평가나 개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관련 예산까지 축소된 것도 클리닉 등록자 수 감소의 원인"이라며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략)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 정책과 캠페인이 흡연 예방 측면 등에서 많이 보완됐고, 최근 10년 새 사업이 다변화했다"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나 심각한 흡연자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 지원센터 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업별로 효과성을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재편해 효율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어디서든 QR스캔 한번이면 금연클리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전히 많은 보건소가 전화와 종이 서류를 통해 아날로그 방식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뻘뻘한 4~5장짜리 금연클리닉 신청서를 내담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실무자와 시민 모두에게 큰 부담입니다.

금연ON 서비스는 신청자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정보를 입력하면, 관리자는 기존 금연클리닉등록 서식과 동일한 양식으로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해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테스트용 QR

정보수집 동의서

흡연자 평가

전자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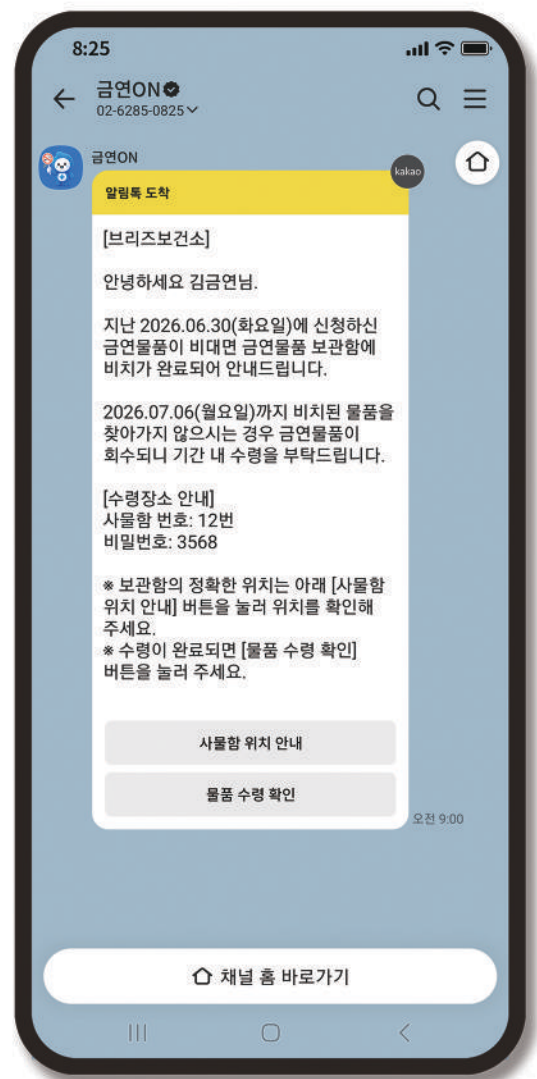
비대면 금연물품 보관함에서 보건소 운영시간 종료 후에도 금연물품을 수령가능합니다!

금연을 결심한 많은 시민들이 평일 업무시간 중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해
금연클리닉 등록을 포기하곤 합니다.

'비대면 금연물품 전달함'은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넘어,
시민에게는 최상의 편의를, 보건소에는 빈틈없는 운영 효율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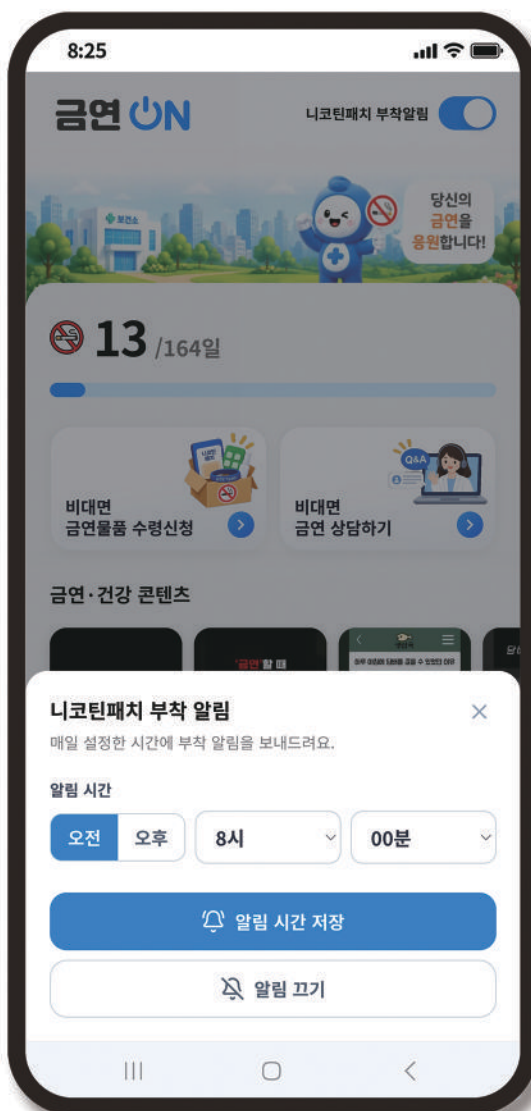


※ 기존에 운영중인 금연물품 전달함이 있는 경우에도
금연ON 시스템을 통해서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MMS로 물품수령 안내를 보낼수 있습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니코틴패치 부착알림 서비스가 쟁겨드려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춤형 푸시 알림을 보내주어 니코틴패치 부착 타이밍을 정확하게 쟁겨드립니다.
또한 요일별로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부착 위치를 추천해주어 안전한 사용을 돕습니다.
이와 함께 부착 시 주의사항과 올바른 사용법 가이드를 직관적으로 제공하여
금연 성공률과 보건소 서비스 만족도를 동시에 높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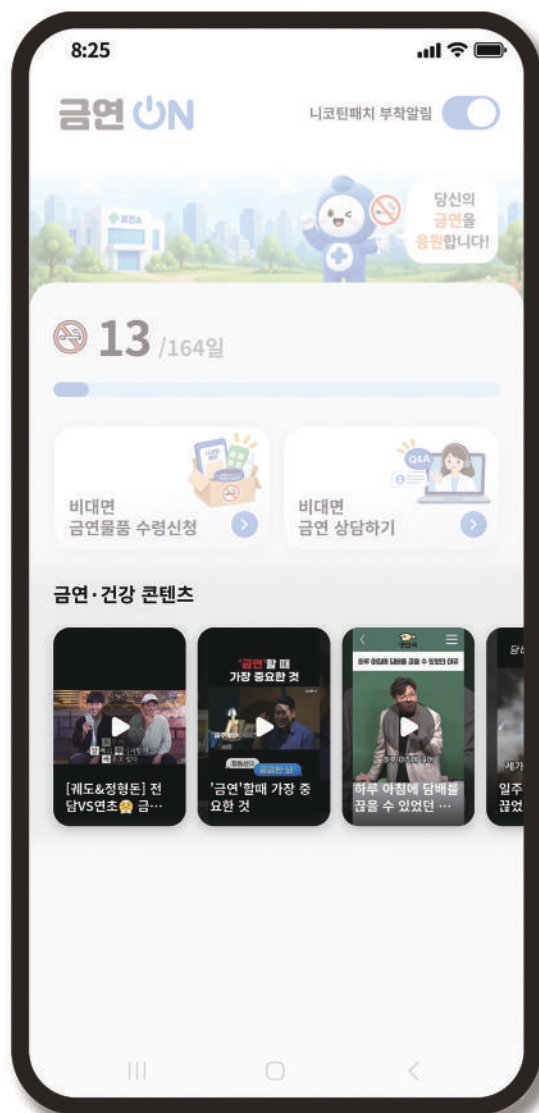
유선통화가 어렵다면 비대면 금연 상담을 이용하세요

시민이 모바일 앱을 통해 궁금한 점을 글과 사진으로 자유롭게 남기면,
보건소 담당자가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여 기존의 번거로운 유선 상담을 스마트하게 대체합니다.
담당자 답변은 사진뿐만 아니라 이미지, PDF, HWP 등 다양한 파일 첨부 기능을 지원하므로
시민의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훨씬 더 정확해집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어 실무자의 업무 효율은 높이고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극대화합니다.



지루한 금연은 가라! 유익하고 흥미로운 금연 콘텐츠!

전문가가 엄선한 금연 · 건강 관련 유튜브 영상과 카드뉴스를 정기적으로 업로드 해드려요.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채워야 하는 수고를 덜어드리고 시민들에게는 지속적인 금연 동기를 부여합니다.
물론 각 보건소에서도 맞춤형 건강 자료를 손쉽게 직접 업로드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에 금연클리닉 QR코드를 담아보세요

금연구역(禁煙區域)

[명사]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된 장소~~

금연의 첫 시작을 내딛는 장소

금연ON과 함께라면 금연구역은 금연을 시작하는 장소가 됩니다!



사업 기획서 작성의 고민, 이제 '금연ON'에 맡기고 금연클리닉 운영에만 집중하세요

금연ON에서는 사업도입 편의를 위해 프로그램 도입용 사업 계획안을 제공해드립니다.

※ 과업지시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 양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금연온” 검색 또는 <https://www.no-smoking.kr/>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Web 기반 금연클리닉 '금연ON' 운영체계 도입 검토보고

2027. 01. 01.

○○시 ○○구보건소

Web 기반 금연클리닉 '금연ON' 운영체계 도입 검토보고

○○시 ○○구보건소 건강증진과

1. 추진 배경

- 디지털 전환(DX) 및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라 공공분야에서도 비대면 행정서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 금연클리닉 운영 또한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과 지속적인 금연관리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웹 기반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추진 근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2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4.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 2항 4호)

3. 추진 목적

- 웹 기반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한 금연클리닉 등특자 확대.
- 바쁜 금연클리닉 방문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 신청서 및 설문지 전자화를 통한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및 탄소중립 실현.
-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적극행정 및 스마트 보건행정 구현.
- 성공적인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금연율 감소 및 시민 건강증진 기여.

4. 추진 범위

- 시민 중심의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체계 구축
 - 웹(Web) 기반으로 QR코드 스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내 URL을 통해 금연클리닉 신청부터 상담 및 지속 관리까지 가능한 바쁜 운영환경 구축.
- 비대면 금연 물품 수령체계 운영
 - 보건소 관내 (외부)에 비대면 금연물품 수령함을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상시 금연지원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참고사항: 금연구역 보건소 금연물품 전달함

금연ON에서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꼭 보세요! 코로나19

군부대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계획

○○군보건소 건강증진과

1. 추진 배경

-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이해 금연문화 정착 유도.
- 군부대가 많은 ○○군의 지역 특성상,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군 병병들에게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삼재 추구

2. 추진 근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1항)
- 민간에 비해 높은 군 병병 흡연율

2019년 남병 병관 흡연율 25.7% (2019년 국민건강증진조사)
2019년 군병병 흡연율 43.7% (2019년 군 병병 흡연 실태조사)

3. 추진 목적

- '장병의 건강이 곧 국가의 근원'임을 인식하고 군 병병 금연 의지 고취와 금연 분위기를 조성시켜 군부대 내 금연문화를 정착
- '일대 천 배로 담배, 군에서 끊는다'라는 건강장 군대 이미지를 형성

4. 추진 방향

- 단시간 내 많은 장병들이 금연클리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금연ON) 활용
- 군 병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군정함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 (모바일 키프터, 일제형 스마트폰 충전기, 군용 OGA 티셔츠 등)
- 군 병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우수 소대/보대 포상 건의

5. 세부 추진 계획

- 사업기간: 2021.05.01 ~ 2021.05.31.
- 언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비대면 금연클리닉사업 홍보
- 비대면 금연클리닉사업 포스터 제작 및 군부대 내 게시

○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개요

1단계(대수) 시민 개인별 별 다른 스마트 '금연ON' 앱 다운로드	2단계(가입) 준비단계 필요 가입 가족여부를 002로 입력	3단계(신청) "금연ON" 앱에서 리전을 통해 비대면금연클리닉 신청 6개월간 금연클리닉 참여 (1일차 물품 수령)
4단계(물품수령) 2021년 5월 31일 수일 및 6월 1일 전까지 수령 금연클리닉 물품 수령	5단계(금연지원) 금연지원금 100만원 금연클리닉 상담 지원	6단계(금연정리) 6개월 금연 후 2021년 11월 30일 금연클리닉 상담 추진 담당자에게 상담

6. 행사 사항

- (보건소 협조) 행사 참여자 참여 선별 코로나19 검사 지원
- (군부대 협조) 담당자 정보기기(스마트폰, 노트북 등) 반입허가
- (군부대 협조) 행사 진행 지원 및 사관차량 제공
- (군정 협조) 언론 보도자료 배포
- (금연ON 운영사 협조) QR코드를 대신할 App 설치 주소 제공

7. 기대 효과

- 전달대비 금연클리닉 참여자의 증가
- 소대 및 보건소 대비 금연클리닉 참여자의 증가
- 00군 지역 금연문화 정착에 기여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구성으로 제공합니다

⌚ 시스템 도입 비용 안내

지자체 인구 수	비용 (VAT 포함)
300,000명 초과	660,000원 / 1개월
150,000 ~ 300,000명	550,000원 / 1개월
50,000 ~ 150,000명	440,000원 / 1개월
50,000명 미만	330,000원 / 1개월

※ 위 비용은 “비대면 금연물품 보관함” 구매 비용이 제외된 금액이지만, 2027년 01~12월 전기간으로 사업도입을 하는 보건소에는 무상으로 “비대면 금연물품 보관함”을 제공합니다.

※ 연중 계약 진행시 잔여 개월수 동안만 계약도 가능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민간기업과 사업을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없을까요?

금연ON과 함께하는 비대면 금연클리닉, 저희가 관계법령 근거를 미리 확인했습니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1항)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2항)
-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9조 2항)
- ▣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32조 2항)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3의2.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